



英美系 目錄規則의 發展과 書名著者 表示事項에 대한 記述形式의 變遷考 〈Ⅱ〉

李 春 澤

(昌原專門大學 專任)

II. 英美系 主要目錄規則의 變遷과 그 分析

1.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目錄規則

全文 91條 및 地圖資料目錄作成法으로 되어 있는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目錄規則은 당시 大英博物館圖書館의 司書로 在職 중이던 Anthony Panizzi卿에 의해 成案되어 1839年 理事會의 裁可를 받아 1841年에 出版되었다. 時代的으로 볼 때 이 規則이 考察된 時期는 一定한 目錄規則이 存在하지 않았던 草創期였던 만큼 現在와 같은 一定한 體系나 區分이 없고 다만 91個의 條項을 列舉하는데 그쳤으므로 現在의 立場에서 보면 粗雜하고 原初의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本稿의 性格上 現在의 觀點에서 書名著者 表示事項에 대한 規則만을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句讀點： 이 規則에서는 句讀點事項을 別途로 規定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는 AACR 第2版의 體系에 따라 句讀點事項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이 規則에서는 각 事項間을 區別하는 句讀點이나 文段바꿈, 인렌션 등에 관한 條項은 일체 없으며 다만 圓括弧¹⁾와 角括弧²⁾의 用例에 대해서만 言及하고 있다. 이 중 角括弧의 用例는 주로 所定의 情報源 이외에서 취한 情報³⁾와 記述한 事項이 不正確한 경우⁴⁾, 目錄作成者自身이 記述한 事項⁵⁾을 주로 다룬 점에서 現代의 그것과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書名의 記述： 이 規則의 가장 큰 特徵은 現在까지도 標目選擇의 大原則이 되고 있는 著者名標目原則의 發想이다. 따라서 著者名을 標目으로 하고 그 다음에 書名을 記錄하도록 規定하였다.⁶⁾ 그에 關聯된 細則을 살펴보면 第18條의 “다음으로 記述되어야 할 事項은 書名으로 小數의 單語로 表示한다. 著者에 관한 것만으로 된 書名은 著者が 그의 著作에 대해 標題記述을 意圖했던 모든 것을 讀者에게 傳達해 주기 위해서 必要할 수도 있다. 本來의 바른 緜字는 그대로 保存되어

야 한다”⁷⁾는 條項이다. 이 條項은 AACR 第2版의 “本書名記入에 있어서 語法, 順序, 緜字에 대해서는 正確하게 轉寫한다”는 條項 및 “本書名이 著者表示를 包含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轉記한다”⁸⁾는 條項과 거의 類似하다. 여기에서 볼과 몇 條項 되지 않는 記述規則 가운데 書名記述法을 명확히 規定했다는 事實과 現在까지도 크게 變更되지 않고 存續해 오고 있다는 事實은 이 條項이 記述의 核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第25條의 “부분(parts), 卷(volumes), 分冊의 番號나 또는 각 著者の 著作의 特別한 部分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著名의 單語로 다음에 細分해서 明記한다”⁹⁾는 條項은 AACR 第2版의 “만일 한 著作을 위한 本書名이 文法적으로 連結되지 않은 두 部分 이상으로 나누어진 또 다른 著作의 한 部分이거나 補充의인 것인 경우에는, 먼저 主著作의 書名을 記錄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獨立順으로 補充의인 著作이나 그 部分을 附記한다”¹⁰⁾는 條項과 類似하며, 第28條의 “만일 初期의 印刷本이 고딕體나 黑字體(Gothic or Black letter)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書名의 끝부분에 —G.L. or B.L.이라고 表示한다”¹¹⁾는 條項은 어느 規則에서도 볼 수 없는 特異한 條項이다.

1) Panizzi, Sir Anthony and Others, Rules for the Compilation of the Catalogue in Catalogue of Printed Book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1841. p. vi. 20條

2) ibid. pp.v-vii. 2, 14, 20, 21, 41, 50, 52條

3) ibid. p.v. 14條

4) loc. cit. 2條

5) ibid. pp. vi-vii. 20條 50條 52條

6) ibid. p.vi.

7) loc. cit.

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LA, 1978. p. 18.

9) loc. cit.

1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p. cit. p.19.

11) Panizzi, Sir Anthony and Others. op. cit. p. vi.

C. 著者表示 : 이 規則에 있어서 著者表示에 관한 規定은 原則上 달리 規定하지 않고 다만 標目으로서의 著者名의 記入形式에 관해서 記載時에 발생할 수 있는 特殊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第14條 “一般的으로 알려지지 않은 筆名을 가진 사람은 角括弧에 넣어서 筆名 앞에 ‘自稱’이란 말을 附記한다.”

第17條 “MC나 M으로 시작하는 固有한 이름은 Mac으로 記入하고 다른 形式으로부터 參照한다.”

그러나 다만 第39條에 “匿名으로 된 出版物의 著者名이 밝혀질 때마다, 또는 推測에 의해서 司書는 角括弧에 插入하여 書名의 끝에 記載한다”¹²⁾는 規定이 있다.

그러므로 Panizzi의 規則에서는 標目은 原則적으로 著者名으로 하되 書名 다음에 著者表示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匿名의 出版物에 한해서 그 著者名을 알 수 있으면 이를 角括弧에 插入해서 書名 다음에 記入하도록 規定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英博物館圖書館 目錄規則은 句讀點, 文段바꿈, 인센션 등을 일체 規定하지 않았으나 第18條의 “다음으로 記述되어야 할 事項은 書名으로……”라 하여 어떤 但書 없이敍述한 것으로 보아單一文段記入形式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角括弧의 用例는 所定의 情報源이외에서 취한 情報와 記述한 事項이 不正確한 경우, 目錄作成者自身이 記述한 事項 등을 다룬점 등은 內容上 現代의 그것과 거의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著者名을 標目으로 選擇한다는 原則을 規定하고 있으나 記述部分에서는 書名 다음에 原則적으로 著者表示를 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2. Jewett의 目錄規則

原名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 with Rules and Examples로 1853年에 刊行된 Jewett의 目錄規則은 全文 39條의 간단한 規則이다. 그러나 本規則의 構成은 標題(1—12條), 標目(13—19條), 相關參照(30—31條), 排列(32—37條), 地圖, 刻, 樂譜(38條), 例外(39條) 條項 등으로 簡略하지만 比較的 차임새 있게 構成되었으며, 각 條項 다음에는 그 條項에 대한 敘衍의 說明을 추가하여 理解하기 쉽고 適用하기에 容易하도록 하였다. 그 중 書名著者 表示事項에 관한 條項만을 現在의 立場에서 比較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句讀點 : Jewett의 目錄規則 역시豫備規則이라고 別途로 規定한 條項은 없다. 그러나 AACR 第2版의 體系에 따라豫備規則에서 다루고 있는 句讀點에 관한

條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第13條의 文段바꿈 條項¹³⁾으로 標目을 書名 위에 記載하도록 하여 標目과 書名을 分離함으로써 文段바꿈 條項을 最初로 規定하였다. 둘째로는 圓括弧¹⁴⁾와 角括弧¹⁵⁾의 用例로써 그 중 角括弧의 用例는 所定의 情報源 이외에서 취한 情報¹⁶⁾와 記述事項이 不正確한 경우¹⁷⁾, 目錄作成者自身의 記述事項¹⁸⁾에 適用시킨다는 점에서 Panizzi 目錄規則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標題紙의 句讀點 事項으로 本規則自體에서는 具體적으로 言及하지 않았으나 第2條의 “標題는 正確하게 轉記되어야 한다”고 規定한 規則의 說明의인 周知事項에서 “標題紙의 句讀點은 存續시켜야 한다. 現代圖書의 標題에 있어서 종종 句讀點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그대로 記入하여, 대신 그 사이의 スペース를 넓게 할 수도 있다”¹⁹⁾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基本의 規則條項이 아니라 註記의 事項이긴 하지만 句讀點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으며, 아울러 액센트 관계, 文字의 形態記述, 大文字로 된 頭文字²⁰⁾ 등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다.

B. 書名의 記述 : 書名의 記述에 관한 規則은 全文 39條 중 1—4條에 걸쳐 規定하고 있다. 우선 그 중 第1條에 “標題는 著者名, 編輯者名, 翻譯者名, 注釋者名, 繢刊者名 등을 포함하여 그들이 標題紙에 位置하고 있는 그대로 完全하고도 正確하게 轉記하여야 한다”²¹⁾고 規定하여 그 基本原則은 Panizzi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나 著者名標目的 原則 아래서 記述部에 著者名 編輯者名 등을 조합하는 書名著者 表示事項의 原則을 最初로 定立하였다. 다음으로 第2條에는 “標題는 正確하게 轉記되어야 한다”²²⁾하여 正確한 轉記를 原則으로 하였다. 만일 head-title도 없고 版權紙도 없는 著作의 記述은 그 著作의 識別에 所用될 수 있는 單語를 英語로 角括弧에 넣어서 記載한다”²³⁾는 條項은 어느 規則에서 도 볼 수 없는 特異한 條項으로, 이 規則만이 갖는 特

12) ibid. pp. v-vii.

13) Jewett, Charles C.,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 With Rules and Examples,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1853. p.45. 13條

14) ibid. p.46. 13條

15) ibid. pp.35~62. 4, 5, 6, 12, 14, 18, 38條

16) ibid. pp.36~44. 6條

17) ibid. p.46. 14條

18) ibid. pp.35~49. 4條

19) ibid. p.32.

20) ibid. p.32~33.

21) ibid. p.29.

22) ibid. p.31.

23) ibid. p.35.

徵이라 하겠다.

C. 著者表示 : 이 規則에서는 著者表示를 別途로 規定하지 않고 前述한 바와 같이 書名에 포함시켜서 그들이 標題紙에 位置하고 있는 그대로를 正確히, 그리고 完全하게 轉記하도록 하여 最初로 記述部에 著者表示를 포함시켰고, 編輯者, 翻譯者, 注釋者, 續刊者까지 著者の範疇를 擴大하였으며, “만일 標題紙에 2人 이상의 이름이 있어서 그 著作이 2人 이상의 所產이라 는 것이 表示되었으면, 그 첫번째 이름이 主導的인 이름으로써 標目이 된다”²⁴⁾고 만 規定하여 나머지 著者の處理方法 등을 規定하지 않았던 Panizzi의 規則에 비하면 상당히 具體的으로 發展한 셈이다.

이상으로 Jewett의 目錄規則을 要約해서 論評한다면 이 目錄規則은 全體的으로 볼 때는 全文 39條로 原文은 比較的 간단하나 Panizzi 目錄規則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修正形態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體系的으로 볼 때는 標題·標目·參照·排列 등으로 規則을 區分하고 解說의 條項 등을 추가시켜 간단 명료하고도 比較의 차임새 있게 構成된 規則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細部的으로 볼 때도 前述한 바와 같이 많은 變化가 있었고, 文段바꿈, 句讀點, 액센트關係등과 標題事項에 著者·翻譯者등을 包含시킨 것 등은 이 規則의 特性인 同時に Panizzi의 目錄規則에 비하여 상당히 進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Cutter의 辭典體目錄規則

Boston Athenaeum 圖書館의 館長으로서 在職하던 Charles A. Cutter에 의해서 考察된 辭典體目錄規則은 1876年 그 初版이 發行된 이후 第4改訂版까지 出版되었으나 本稿에서는 便宜上 그 決定版인 第4改訂版을 基準으로 書誌의 記述事項 가운데 書名著者表示事項에 관한 規則만을 前章에서 言及한 Jewett 目錄規則 中의 그것과 對比하여 分析·檢討하고자 한다.

Cutter의 目錄規則은 대체적으로一般的인 周知事項(general remarks), 用語解說(definition), 標目的 選定(entry), 著錄의 形式(style), 기타의 目錄(other catalog), 特殊刊行物 및 기타 資料編目法斗 附錄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각 條項마다에는 詳細한 解說을 敷衍하고 있다.

書名著者表示事項에 대한 規則은 B. 著錄의 形式篇의 書名의 記入(titles) 第221條에서 253條까지, 句讀點에 대한 規則은 第292條에서 297條까지의 句讀點事項에 規定되어 있다. 이들을 一覽하면 다음과 같다.

A. 句讀點 : 이 規則에서는 目錄規則史上 처음으로 句讀點事項을 比較的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規則第292條는 著錄 全體에 대한 句讀點形式을 規定하고 있

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각 著錄은 네개(혹은 다섯개)의 文章으로 構成한다.
- 1. 標 目 Cicero, Marcus Tullius.
- 2. 編者 및 翻譯者 Brutus de claris oratoribus; erkl.
- 3. 版 次 2e aufl.
- 4. 圖書에 주어진 出 Berlin, 1856.
版事項
- 5. 目錄作成者에 의 O.
해서 첨가된 出版
事項의 部分²⁵⁾

上記한 바와 같이 著錄 내에서의 標目, 書名 및 編者나 譯者, 版次, 出版事項 등을 각각 하나의 獨立된 文章으로 보고, 그 末尾에는 피어리어드를 적어 각 事項을 區別하도록 하고, 특히 書名 및 編者와 譯者는 한 事項으로 취급하여 書名과 編者 및 翻譯者를 콜론으로 分離²⁶⁾하는 原則을 最初로 規定하였다. 액센트에 관해서는 第293條에 “그들이 만일 書名에 記載되지 않았다면 適切한 액센트를 補記하라”고 規定하고 “稀貴本의 경우는 그 書名을 正確히 轉寫하여, 액센트는 補記하지 않아야 한다”²⁷⁾고 敷衍하고 있다.

上記한 書名著者表示事項과 관련된 句讀點 條項들은 이전의 어느 規則에서도 規定하지 않았던 新規條項들로서 現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未備點을 지니고 있지만當時로서는 充分한 價値를 지녔다고 생각되며, 후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Panizzi나 Jewett 등過去의 規則에서 基本的인 規則 이외의 解說의 事項으로만 취급하던 事項을 최초로 規則化하였는데 그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 書名의 記述 : 이 規則에 있어서 書名의 記述에 관한 規則은 著錄의 形式篇에서 ①順序(order), ②短縮, ③雜則 및 周知事項(miscellaneous and remarks)으로 區分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 그 중 單行本의 書名의 記述에 대한 細則을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第221條의 “書名語의 順序를 유지하라”²⁸⁾는 條項은 前規則 第1條의 “…標題에 位置하고 있는 그대로를 完全하고도 正確하게 轉記하여야 한다”는 條項에 의해 書名語의 順序만을 強調하고 “完全하고도 正確한 轉

24) Panizzi, Sir Anthony and Others, op. cit. p. v.

25) Cutter, Charles A.,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109.

26) ibid. p.110. 本書名을 編者나 翻譯者에 관련된 節과 分離한 것은 大文字使用의 極小化를 위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27) loc. cit.

28) ibid. p.92.

記”라는 말을 削除하였고, 前規則이 著者名, 編輯者名, 翻譯者名, 注釋者名, 繕刊者 등을 모두 書名의 記述에 포함시킨데 反해, 이 規則에서는 그러한 條項은 없으나 第222條 등의 例示²⁹⁾와 第292條를 볼 때 著者名은 除外하고 編輯者와 翻譯者만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이 判異하게 달라진 점이다.

短縮條項에 대해서는 比較的 細密히 規定하여 第223條에 “가능한 圖書館의 利用이 細心할수록 書名은 더 옥 完全해야 하며, ‘完全’이라는 것은 情報에 관한 것 이어야지 單語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주 긴 書名은 精選된 몇 개의 單語만큼 意味를 充分히 傳達하지 못한다. 短縮에 대해서 規定할 수 있는 正確한 規則이란 있을 수 없다. 書名은 同一著者の 相異한 著者나, 同一書의 異版을 혼동 한다든가 또는 그 書名에 대해서 그것에 留意를 한 적이 있다거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誤認을 한다든가, 著作이나 主題의 性質과 그 主題의 取扱法에 대한 概念이 誤傳된다거나 또는 不充分할 정도로 너무 短縮되어서는 안 된다. 反面에 書名의 殘餘部分(the rest of the title)이나 주어진 標目下에 그것의 位置로부터合理的으로 推論할 수 있는 어떤 것(anything)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³⁰⁾라고 書名短縮의 概念과 그 方法을 자세히 說明하였고, “기타 모든 不必要한 單語를 省略하라”³¹⁾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年代를 나타내는 文句는 그 年度를(아라비아 숫자로) 表示한다.” “숫자는 單語代身 아라비아 숫자로 表示하라”³²⁾고 規定하여 from the accession of Edward III. to the death of Henry VIII.를 [1327-1547]로 表記하고, thirty thousand를 3000으로 表記하도록 하여 前規則까지 “正確하고 完全하게 標題紙에 位置하고 있는 그대로 記入하여 翻譯되어서는 안 된다”던 것을, “書名은 完全해야 하며 完全이라는 것은 情報에 관한 것인지 單語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規則에 依據하여 目錄作成者가 이를 고쳐서 記入하도록 規定하였다. 이 외에도 短縮에 관한 많은 條項이 있으며 類例 없이 書名의 短縮과 省略에 대해서 細密하게 規定하고 強調한 것은 Short, Medium, Full의 세 가지로 分離한 書名의 適用과 主題目錄을 포함하는 辭典體目錄이 갖는 固有特殊性 때문인 것으로 考慮된다.

한편 기타 書名의 記述에 대한 細則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條項들은 모두 書名을 記述하는 데에 發生할 수 있는 모든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한 細則으로 前規則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仔細히 規定하였고 規則數도 增加하였으나 一貫된 體系가 敘고 散漫하다고 볼 수 있다.

C. 著者表示：前述한 바와 같이 單一著者の 著作의

경우 書名 다음의 著者表示에 대해서는 별도로 規定하지 않았으며, “여러 著者の 著作을 함께 모은 사본을 圖書 存在의 原因으로 適用할 수도 있다”³³⁾고 定義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된 條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292條의 句讀點事項에서 編輯者와 翻譯者를 包含한 書名이라고만 規定하였고, 第222條의 例示(註29 參照)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記述部에서는 다시 著者表示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共著者の 경우는 달라서 “共著者名을 위한 標目은 첫번째 著者名만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다시 敷衍的인 說明條에 “기타 著者名은 세명일 경우에 한해서 書名에 주어질 수도 있다. 만일 그 이상이라면, 그들이 目次에 記載되어 있지 않는 한 註記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만일 그들이 多數라면 그들은 전혀 記錄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기타 著者가 있다는 사실만은 書名이나 註記로 記述하여야 한다”³⁴⁾고 하여 共著者が 세명일 경우에 한해서는 書名에 包含시켜 記入하도록 하고, 그 이상일 경우의 著者名은 直接記載하지 않고 書名이나 註記로 하여 그와 같은 實事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기타 著者表示에 관련된 規則으로는 第252條 : 匿名著作의 書名著錄에 있어서는 著者名을 角括弧에 插入한다. 第253條 : 書名에 記載되는 Lord, Gen, King, ed., tr., 등과 같은 單語는 이탤릭體로 하지 않는다”³⁵⁾는 등의 條項이 있다.

이상에서 論及한 Cutter의 辭典體目錄規則을 要約해서 論評한다면, 이 規則은 比較的 體系를 잡으려고 努力하였으나 細部의 位置를 볼 때는 體系나 一貫性이 없다.

句讀點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規則化하였고, 書名의 記述도 比較的 詳細하나 短縮이나 省略條項이 지나치게 詳細하여 마치 規則自體가 短縮이나 省略를 위한 規則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單一著者の 著作에 대해서는 書名 다음에 著者表示를 한다는 規定이 없으며, 共著者が 세명일 경우에 한해서 標目으로 選擇되지 않은 나머지 著者名을 書名 다음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29) loc. cit. 本規則에서 著者は 除外하고 編輯者와 翻譯者만을 包含시킨다는 條項은 없으나 222條의 例示는 American Commonwealths. Virginia; a history of the people. by John Eston Cooke는 Cooke, J: Eston, Virginia; a history of the people. Boston, 1883. D. (Amer. Commonwealths.)라고 記入한다”하여 著者名이 除外되었고 292條 2項에는 “the title, including editors and translators”라 하여 編輯者와 翻譯者만을 包含시킨 점으로 보아 著者は 記述部에 包含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 loc. cit.

31) loc. cit.

32) ibid. pp.94~95.

33. ibid. p.14.

34) ibid. p.90.

35) ibid. p.99.

그외에 標目으로 選擇되지 않은 編輯者나 翻譯者만을 書名 다음에 記錄하도록 하였다.

4. LC의 目錄記述規則

現代의 目錄作成法의 역사는 1940年 LC에서 맛이 하였던 目錄作成法의 轉換點에서 시작하였다.³⁶⁾ 그러한 轉換點은 첫째로 1941年 Andrew Osborn의 “目錄作成法의 危機”와 둘째, ALA 目錄規則 第2版의 豫備版에 있어서 規則의 精巧함을 둘러싼 爛亂은 關心으로 表面化되었다. 그러한 一連의 方向의 變化는 Seymour Lebetzky의 一次的인 調查에 根據를 둔 “目錄記述法에 關한 研究”를 誘導하였고³⁷⁾, 이를 基礎로 하여 1949年 ALA 目錄規則의 記述部에 해당하는 LC 目錄記述規則이 發行되었다.

이 規則은 最初의 本格的인 目錄記述規則으로서 單行本에 대한 記述規則으로부터 地圖, 樂譜, 影印本은 물론 古版本(incunabula)에 이르기 까지를 網羅하고 있다. 이 規則의 構成은 대체로 12個의 章과 附錄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目錄記述法의 定義와 目錄記述法의 原則 등과 用語解說, 大文字使用法, 略語表 등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單行本의 書名著者表示事項에 대한 規則은 第3章의 5條와 6條에 規定되어 있는 바 이들을 Cutter의 그것과 對比하여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A. 句讀點： 이 規則에서는 句讀點에 關한 事項을 달리 規定하지 않고 다만 ‘書名의 記述’ 事項 가운데에 附隨的으로 간단하게 “句讀點事項은 可能한 한 關聯된 言語의 適用될 수 있는 現行慣例에 따라야 한다” “콤마나 피어리어드는 한 字 간격으로 代用한다”³⁸⁾고만 規定하고 있을 뿐이어서 Cutter의 그것에 비한다면 이 規則에서는 句讀點事項이 거의 度外視되고 있다는 것 이 特徵이다.

그러나 看過할 수 없는 하나의 事項은 文段마꿈 條項을 仔細하게 規定한 것이다. 第3章 2條의 “記述의 組織”에 關한 規則에는 “一般的으로 著錄의 本體(body of the entry)라고 불리는 記述의 基本的인 部分은 標目 다음 첫 文段에 記載한다. 이것은 다음 要素들로構成되며, 그들의 記述順序는 一般的으로 記述되는 順序에 따라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書名, 副書名, 著者表示, 版次事項(翻譯者, 插圖者 또는 插圖事項도 包含) 및 出版事項, 둘째 文段은 對照事項 및 叢書註記事項으로 構成한다”³⁹⁾고 規定하여 著錄의 本體의 記述順序를 確定하고 文段마꿈의 典型을 만들었다.

B. 書名의 記述： 이 規則에 있어서 書名의 記述에 대한 規則은 第3章 5條에 規定되어 있으며, 이를 ④

短縮 ⑥ 둘 또는 그 이상의 言語로 된 書名 ② 音譯으로 된 書名 ④ 附加 ⑥ 補記된 書名 ① 別書名 ⑤ 副書名 등으로 區分하였는 바 이들을 一瞥하고 Cutter의 그것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本書名은, 句讀點과 頭文字使用을 제외한 順序, 語法 및 緩字에 대하여는 正確하게 轉寫한다. 目錄著錄에 있어서 頭文字와 句讀點은 可能한 한 關聯된 言語言의 適用될 수 있는 現行慣例에 따라야 한다. 액센트는一般的인 慣例와 一致하도록 附記한다. 우드라우트를 除外한 強勢符號는 大文字와 頭文字에서는 省略된다(단, 佛語의 頭文字 E만은 제외). 非常用의 判讀記號는 특별히 만들어진 活字나 또는 原稿本으로 添加함으로써 再現하거나 無視될 수도 있다. 印刷上の 特性은 無視한다: 例를 들면 19世紀 및 20世紀의 著作物에 있어서 U字 대신에 V字, j字 대신에 i字를 使用한 것 등이다. 獨逸語에 있어서 母音 위에 있는 ‘e’는 우드라우트로 代替한다”⁴⁰⁾는 條項은 原則上 書名을 正確하게 轉記한다는 점에서 Panizzi의 規則에서부터 정해진 一貫된 條項이며, 그 외의 條項은 原則에 대해例外的인 것으로 國際 간의 書籍流通의 增大에서 오는 영향을 規則에 反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上記條에 附隨된 것으로 “古書體이거나 裝飾的인 것 등으로 간주되는 漢字는 可能하면 「康熙字典」이나 上田(우에다)의 「大字典」에 있는 것과 一致되는 漢字를 사용한다”⁴¹⁾는 條項은 후에 追加된 條項이다. 또한 “그 圖書館에 있는 印刷設備로써 複製할 수 없는 記錄 및 기타 事項은 目錄作成者の 記述로 代替”하며 “行의 終了는 稀貴本의 두 版 또는 여러 發行本을 區別하는 그 이의의 모든 方法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그려한 圖書의 書名이 韻文으로 印刷된 것을 表示하기 위해서만 表示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① 別書名. “別書名은 그 圖書가 그 別書名으로 參照될 수 있고, 또는 그 圖書의 다른 版에서 別書名이 本書名으로 刊行될 수도 있기 때문에 目錄著錄으로 항상 轉寫되어야 한다.”⁴²⁾ 이는 Cutter規則 第235條에 약

36) Osborn, Andrew, Descriptive Cataloging,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1963. p.ii.

37) ibid. p.20.

38) The Library of Congress,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p.12.

39) ibid. p.10.

40) ibid. p.12.

41)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Rule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Library of Congress: Additions and Changes 1949~1958.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59. p.59.

42) loc. cit.

간의 記錄해야 하는 理由를 敷衍하였을 뿐 內容上에는 변함이 없다.

② 副書名. “副書名은 書名의 一部分으로 看做하고, 書名과 分離할 수 있는 긴 副書名은 省略될 수도 있고, 만일 그것이 著錄의 明確性을 增加시킬 경우 補充註記에 引用할 수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書名과 동일한 方法으로 目錄著錄으로 轉寫한다. 標題紙에 있어서 書名 앞에 있는 副書名은 目錄著錄의 一般的인 形式에 따라 決定된 位置로 轉置한다. 書名머리에 있는叢書事項이나 기타 事項을 하나의 副書名으로 誤認하지 않도록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⁴³⁾고 副書名의 概念과 그 記述方法을 처음으로 記述하고 있다. 이는 出版物의 量的 增大와 그 形態의 多樣化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 規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 著者表示 : 著者表示에 대해서는 이전의 어느 規則에서도 別途로 規定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著者를 標目으로 選定함으로써 다시 二重으로 記入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無著者나 編輯者, 譯譯者 등만을 다루어 왔다. 그에 따라 이 規則에서는 著者表示라는 條項을 新設하고 書名의 記述과는 別途로 代等하게 다루고 있다. 第 3章 6條에 規定된 規則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著作에 記載되어 있는 著者表示는, 만일 그것이 다음의 目的 가운데 한 가지라도 諸當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만 目錄著錄으로 編入된다.

- a. 著者標目으로 採擇된 形式과 그 著作에 表示되어 있는 이름 形式에 있어서, 만일 그 두 가지가 동일한 이름의 뛰혔한 두 가지 形式이 아닐 경우 그 變化를 表示하기 위해서⁴⁴⁾
- b. 匿名으로 著述된 것의 匿名을 表示하기 위해서⁴⁵⁾
- c. 無著者著作의 著者名 보다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事項을 表示하기 위해서
- d. 한 著作에 寄與한 共著者 또는 合同著作者(composite authorship)名을 表示하고, 그 著作에 있어서의 그들의 關係를 表示하기 위해서
- e. 標目에 採擇된 사람의 그 著作과의 關係(만일 이것이 著者, 編輯者, 編纂者 등이 아닌 경우)를 表示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表示하기 위해서
- f. 團體名著者標目으로 記載된 著作에 기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表示하기 위해서
- g. 著者와 關聯되어 있는 團體名으로써, 만일 그 關係가 副著錄(added entry)으로 說明되어야 할 必要가 있는 경우 그 團體名을 表示하기 위해서
- h. 著者名이 만일 그 書名의 必須的인 部分인 경우 書名을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⁴⁶⁾

이상의 規則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則적으로 著者名을 記述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一貫된 事項이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은 特殊한 경우에는 記述의 要素로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規定한 것으로 Cutter規則에서 編輯者와 譯譯者만을 포함시킨 것에 비하면 훨씬 多樣해졌고 細分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結論의으로 이 規則에 있어서, 다만 單一著者の著作에 있어서 標目으로 採擇된 이름의 形式과 그 著作에 表示된 이름의 形式이 동일한 경우는 著者表示를 하지 않으며, 기타 單一著者の著作이라도 標目으로 採擇된 이름의 形式과 그 著作에 表示된 이름의 形式이 다르거나, 共著書, 譯譯書 등일 경우는 모두 書名 다음에 그 著作에 관계된 이름을 記述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① 轉置. “目錄著錄에 포함되어야 할 著者事項이 만일 標題紙의 書名 다음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例外를 제외하고는 書名의 머리나 또는 그 圖書의 다른 곳으로부터 그 자리에 轉置한다. a) 轉置로 인하여 만일 語尾變化에 영향이 있을 경우, b) 만일 著者表示가, 一般的으로는 그 圖書 自體內에서 採記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結이나 構造上 說明을 요하는 것은 补充註記로 보다 더 充分하게 表示한다.”⁴⁷⁾ 이 條項은 記述되는 要素의 順序를 유지하기 위해서 規定한 條項으로 書名의 記述, 著者表示, 版次事項, 出版事項 등으로 이어지는 記述順序의 原則를 遵守하기 위해서 散在하는 要素들을 적절한 位置로 轉置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이다.

② 著者表示로서의 出版事項. “만일 著者에 대한 事實이 단지 出版事項에 있어서의 著者(個人 또는 團體)名에 의해서만 表示되었고, 그리고 만일 著者表示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出版事項이 著者表示를 위한 充分한 代用으로 看做된다.”⁴⁸⁾ 이 條項 역시 新規條項으로 出版物과 書誌記述의 多樣化에서 起因되는 目錄作成上의 難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新設한 條項이라고 볼 수 있다.

43) loc. cit.

44) a) 만일 著作내에 이름이 라틴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標目이 字譯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標目과의 差異를 表示하여야 한다.

b) 만일 標題紙에 女性의 處女名이 記載되어 있고, 著錄은 結婚 후의 姓名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標目에 있는 完全名이 그 關係를 明白히 表示하므로 著者表示는 不必要다(Library of Congress. 1959. op. cit. p. 60.).

45) 만일 標題紙에 實名과 匿名이 모두 記載되어 있을 경에는 著者表示는 두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par Cyrille Wilezkowski (Jean Palois)” (loc. cit.)

46) The Library of Congress. 1949. p.14.

47) loc. cit.

48) loc. cit.

③ 共著者. 를 또는 세 명의 共著者, 協力者, 寄與者名은 著者表示로 記名한다. 만일 셋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이름을 除外하고는 모두 省略한다. 省略은 다음과 같이 表示한다.

- 標題紙가 만일 英語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and others”라는 語句로 表示한다.
- 標題紙가 만일 라틴알파벳을 使用하는 기타 言語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et al”이라는 語句를 使用한다.
- 標題紙가 만일 라틴알파벳이 아닌 것은 書名과 동일한 言語로써 그 語句의 相當語를 表示한다. 이 條項 역시 新規條項으로 Cutter의 規則이 記述部의 共著者處理에 관해서 直接的으로 規定하지 않은데 反해서 이 規則은 이를 正確하고도 世界各國 圖書에 適切히 適用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 著者表示에서의 省略, 職銜 및 住所의 略字, 敬稱, 差別表示(貴族稱號는 제외), 學會名의 頭文字 등을 一般的으로 著者表示에 省略하나 다음과 같은例外가 있다.
 - 稱號가 만일 文法의으로 必要할 경우
 - 稱號가 만일 著者를 識別하는데 必要할 경우
 - 稱號가 만일 그 著作의 標目으로 쓰인 團體著者에 대한 個人著者의 關係를 說明할 경우⁴⁹⁾

“中國, 日本 및 韓國著作에서 著者表示가 著錄으로 採擇한 이름 形式과 相應하는 것을 記載하고 있는 것은, 追加的인 이름 또는 이름 形式을, 그러한 省略이 이름의 順序를 뒤바꾸는 結果를 초래하지 않는 한, 省略한다.”⁵⁰⁾ 이 條項은 上記한 바와 같이 著者表示를 規則化함에 따라 起因되는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한 條項들로써 모두가 새로 規定된 條項이다. 그리고 東洋三國의 著作에 대한 規定은 1959年版에서 追加된 條項이다.

⑤ 著者表示에서의 追加. “標題紙에 表示되어 있는 그 順序를 明示하기 위해서, 또는 分明하지 못하거나 誤認되기 쉬운 事項을明白히 하기 위해서 必要하다면, 書名과 동일한 言語로써 單語 및 語句를 附記한다.”⁵¹⁾

만일 個人이든지 團體이든지 간에 著錄으로 採擇된 中國人, 日本人 또는 韓國人 著者名의 形式이 著者表示의 著者名形式과 一致하지 않을 경우에는 著錄形式에 쓰여진 文字를 著者表示에 附記한다. 만일 刊記에서 採記한 것이라면 附記된 形式에는 圓括弧를 하고, 기타 情報源에서 採記한 것은 角括弧를 한다.⁵²⁾

만일 匿名의 著作이 그 著者的 實名으로 記載된 경우에는 그 匿名이 所有格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著者表示에 있어서 筆名 다음에 “pseud”라는 表示

를 附記한다.”⁵³⁾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規則 역시 著者表示를 規則化함에 따라 起因되는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한 規則으로 모두가 새로 規定된 條項들이다. 그리고 東洋三國의 著作에 대한 規定은 역시 1959年版에서 追加된 條項이다.

이상에서 論述한 것을 要約·檢討해 보면 이 規則은 最初의 本格的인 目錄記述規則으로서 이제까지의 모든 規則들을 綜合檢討하고 急增하는 出版物과 그에 따라 多樣化된 모든 書誌記述方法을 體系化하려고 試圖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후의 目錄規則, 특히 AACR의 根幹이 되었으며, 細部의 條項까지도 現在까지 거의 變更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는 標準의 目錄記述規則이 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東洋三國의 著作에 關聯된 規則들은 모두가 1959年版에서 追加되었으나 이는 AACR 第2版의 豫備版까지만 繼續하였고, 第2版인 決定版에서는 모두 削除되었다.

5. 英美目錄規則—初 版

1967年度에 出版된 英美目錄規則(Angle-American Cataloging Rules: AACR) 初版은 3部 15章 272條 및 6 가지의 附錄으로 構成되어 있는 바 第1部 著錄과 標目, 第2部 書誌記述, 第3部 非圖書資料와 附錄 I. 用語解說, II. 頭文字, III. 略語, IV. 數字, V. 句讀點 및 發音符號, VI. 英國版과 相違한 著錄 및 標目에 관한 規則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각장에 있어서의 規則들은 대체로 一般規則 및 特別規則으로 大別하고 一般規則 다음에는 대체로 基本規則를 두어 각장에서 通用되는 가장 基本의 條項을 規定하였다.

i) 規則에 있어서 書名著者表示事項의 記述에 대한 規則은 第II部 第6章 133條와 134條에 規定되어 있으며 第2版의 경우 豫備規則으로 취급하고 있는 句讀點에 관한 規則은 附錄V에 書誌記述全般에 걸친 句讀點과 함께 規定되어 있다. 이들을 LC의 그것과 比較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句讀點: LC의 目錄記述規則에서는 “關聯된 言語의 通用될 수 있는 現行慣例에 따르도록 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規定하여 거의 度外視되었던 句讀點에 대한 規則은 하나의 附錄으로 하여 途別로 취급함으로써 LC規則에 比해 詳細히 다루고 있다. 그들 중 書名著者表示事項에 關連된 句讀點만을 취급하여 보면 다음과 같

49) The Library of Congress. 1949. op. cit. p.15.

50) The Library of Congress. 1959. op. cit. p.60.

51) The Library of Congress. 1949. op. cit. p.15.

52) The Library of Congress. 1959. op. cit. p.60.

53) The Library of Congress. 1949. op. cit. p.15.

다. 첫째로 句讀點 全般에 대한 規定은, “몇 가지例外 를 제외하고는 目錄著錄에 있어서의 句讀點은 標準的인慣例에 따른다. 明確性을 期하기 위하여 必要하지 않는 한 句讀點의 重複은 피한다”⁵⁴⁾는 條項은 LC規則과 “大差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特殊한 用法으로 個個의 句讀點에 대한 用法은 比較的 仔細하게 規定하고 있다. 그 중 角括弧에 관한 規定은 ① 所定의 情報源 이외에서 鉤취한 情報 ② 그 圖書 이외의 資料에서 補記한 事項⁵⁵⁾등을 規定하였고, 콤마에 관한 規定은 “① 姓과 名을 區別하기 위하여 一定한 國家에 따라서는 姓을 최초에 記載하는 것이一般的인順序인 곳에서도 콤마를 使用한다”는 規定은 西歐人들의慣例上 前規則과 다름이 없으나 이를 規則化함에 의해서 이외의 많은 나라 目錄規則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에 修正된 「韓國目錄規則」의 人名間 콤마 사용에 대한 條項⁵⁶⁾에 대해 뒷바침이 되어 그不合理性이 指摘되고⁵⁷⁾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改正되지 않고 있다. “② 一般的으로 書名은 著者表示로부터 區別하기 위하여 콤마를 使用한다.” “③ 書名의 主要部分과 附隨部分을 區別하기 위하여 콤마를 使用한다”⁵⁸⁾는 條項 등도 모두 LC規則과 별다른 變動은 없으나 다만一般的인慣例를 規則化하였을 뿐이다.

① 省略符號. “省略符號는 書名, 副書名 또는 別書名으로부터의 省略를 表示하기 위하여 使用한다. 略省符號가 書名의一部分으로서 圖書에 表示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개의 鉤은 피어리어드를 使用한다.”⁵⁹⁾ 이 條項 역시 별 變動이 없으며 다만 後者の 경우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② 피어리어드. “피어리어드는 略語 또는 縮約語의 뒤에는, 그 言語의慣例에 따라 使用하거나 省略하거나 한다.”⁶⁰⁾ 이 條項 역시慣例를 規則化한데 不過하다.

③ 引用符號. “어떤 外國語(獨逸語)로 된 著作에서 使用된 特別한 引用符號는, 英語로 된 著作에서慣例의 으로 쓰이는 符號로써 表示하는데 시릴文字 이외의 로마字가 아닌 文字로 쓰여진 것 中의 語를 끊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⁶¹⁾고 처음으로 引用符號에 대한 條項을 規定하였다.

B. 異名의 記述: ① 規則에 있어서 書名의 記錄에 대한 條項은 第6章의 133條에 規定되어 있으며 이들은 A. 一般規則 B. 短縮 C. 둘 또는 그 이상의 言語로 된 書名 D. 로마字化한 書名 E. 附加 F. 補記된 書名 G. 別書名 H. 副書名 등으로 區分되어 있다. 이들을 考察하고 LC의 그것과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第133條 A項의 一般規則은 本來 LC의 書名의 記述에 관한 規則中 序則形式으로 規定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一般規則이란 題目을 附與한 것이다. LC의 規則가

운데 “強勢符號는一般的인慣例와 一致하도록 附記한다. 그러나 우드라우트를 제외한 強勢符號는 大文字와 頭文字에서는 省略된다”는 條項을 削除하였고, 이 規則에서는 ‘強勢附號’는 우드라우트 및 기타 發音符號가 標題紙에 省略되었을 경우에는 本文의慣用과 一致하도록 附記한다”⁶²⁾는 條項을 插入하고 있으며, 약간의 文章修正이 있었을 뿐 거의 變화가 없다.

C. 著者表示: 이 規則의 第134條에 規定되어 있는 著者表示事項은 LC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A. 一般的인事項 B. 轉置 C. 著者表示로서의 出版事項 D. 共著者 E. 著者表示에서의 省略 F. 著者表示에서의 附加 등으로 區別하여 規定하고 있다. 이들을 條項別로 分析하고 LC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 “한 著作에 나타나 있는 著者表示는一般的으로 그것이 個人으로 되어 있든지 또는 團體로 되어 있든지 간에 目錄著錄에 記載한다. 그러나 다음에 表示한 경우는 省略한다. 다만, 그것이 書名의一部分(例: 그것이 代名詞의先行詞인 경우)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는 省略하지 않는다”⁶³⁾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은 “몇 가지의 目的 가운데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目錄著錄에 編入한다”던 LC規則에 比하여一般的으로 個人이든 團體이든 모두 記入하도록 하고 省略하는 경우를例外로 다루어 省略보다는 記入을 爲主로 하도록 한 것이다.例外로써 省略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標目的 이름 形式이 著者表示의 形式과 같은 경우: 다만 個人著作에 관하여는 이름의一部가 하나라도 머릿글자로 表示되어 있으면 省略하지 않는다.

2) 標目的 이름 形式이 著者表示의 이름 形式에 있어서一字씩 對應하는 音譯形일 경우: 다만 個人

5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1967. p.369.

55) loc. cit. 角括弧. 2) 標題紙나 또는 그것의 代用으로 쓰인 것에 表示되거나 아니 한 事項으로서 著錄內에 插入한 것은 角括弧로 끝는다. 3) 그 圖書 이외의 資料에서 補記한 紙書註記事項 또는 그의一部分은 角括弧로 끝는다.

56)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p.32.

57) 李載喆, 東洋人名標目으로서의 形式論, 人文科學, 서울, 延世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67. pp.65~92.
鄭慶謨, 韓國目錄規則의 問題點과 그 改定의前提, 圖書館, 1974, 6월호, pp.10~12.

5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p. cit. p.369.

59) ibid. p.369~370.

60) ibid. p.370.

61) loc. cit.

62) ibid. p.195.

63) ibid. pp.196~197.

- 著者에 관하여는 이름의一部가 하나라도 머릿글자로 表示되어 있으면 省略하지 않는다.
- 3) 標目이 이미 生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써, 標目과 著者表示와의 形이 完全名인가 아닌가의 점에서만 相違할 경우
- 4) 標目에 附記된 生沒年, 地名 또는 識別用語句의 事項을 제외하고, 標目의 이름 形式이 著者表示의 形式과 같을 경우
- 5) 著者表示에서는 所有格形 또는 기타 屈折形(inflected form)의 形式으로 表示되어 있으나 그것을 제외하면 標目의 이름 形式이 著者表示의 形式과 같을 경우
- 6) 團體標目이 地名 아래 記入되어 있다는事實이외에는, 團體標目의 이름 形式이 著者表示의 形式과 같을 경우
- 7) 著者表示에는 團體의 上位機關(각 標目에서는 省略한다)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標目으로 한 團體名의 形式이 著者表示 중의 團體名의 形式과 같을 경우 :
- 例. 標目 : U.S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省略著者表示 :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8) 國家, 州(道), 市, 또는 그 외의 管轄區域 아래 記入된 政府機關標目的 이름 形式이, 그 管轄區域의 이름 形式과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著者表示의 形式과 같을 경우⁶⁴⁾
- 例. 標目 : Pennsylvania, Dpt. of Revenue
省略著者表示 :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上記한 條項들은 모두 新規條項으로써 LC規則이 目錄著錄에 編入하는 경우를 規定한데 反해 이 規則은 原則적으로는 모두 記入하는 것으로 하고 別途로 省略하는 條項으로 함으로써 LC規則과는 性格上判異하게 다르게 規定되었다.

B項의 轉置에 관한 規則은 약간의 文章修正이 있었을 뿐 内容上에는 變化가 없으며, C. 著者表示로써의 出版事項에 관한 規則은 文章은 물론 例示까지도 LC規則과 동일한다. 그리고 D項의 共著者 취급에 대한 規則 역시 약간의 文章修正이 있는데 内容上에는 變化가 없으며, E項의 著者表示에서의 省略에 관한 條項도 역시 LC規則과 동일하다. 그러나 F項의 著者表示에의 附加事項을 다른 規則에서는 LC規則 중 “만일 刊記에서 採記한 것은 角括弧를 한다”는 條項과 “만일 筆名의 著作이 그 著者的 實名으로 記載된 경우에는 그 筆名이 所有格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著者表示에 있어서 筆名 다음에 “pseud”라는 表示를 附記

한다”는 條項을 刪除하여 規則을 簡略化하였다.

이상의 諸條項을 分析한바 이를 要約해서 말하자면 이 規則은 철저하게 LC目錄規則을 답습하고 있어 體系도 거의 동일하며, 條文을 약간 修正하고, 明瞭性을 기하기 위하여 規則을 약간 擴大 및 縮小하고 多少의 文章修正이 가해졌을 뿐 内容上에는 큰 變化가 없다.

6. 英美目錄規則—第2版

國際標準書誌記述法의 영향을 받아 世界書誌統整을 目的으로 改訂發行된 英美目錄規則 第2版은 規則 全體를 2部로 大別하고, 附錄과 索引를 添付한 6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規則이다. 第1部은 書誌記述에 관한 規則을 다루고, 第2部는 標目·統一書名 및 參照에 관한 規則을 다루었으며, 附錄은 A. 頭文字使用法 B. 略語 C. 數字 D. 用語解說로 되어 있다. 그 중 특히 用語解說에 있어서는 初版에 비해 약 2배 가량의 用語를 收錄하였으며, 新用語와 改訂用語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規則의 序頭部에는 總論을 두어 規則 全般에 대해서 叙述하였고 각部에 대한 序論을 分離掲載하여 該當部에 대해서 案内하고 있다.

또한 이 規則은 魅力적인 體制, 豐富한 例示, 内容上의 言語와 本規則의 組織 등⁶⁵⁾ 이전의 그것들과 比較할 때 많은 特徵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大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英國版과 北美版으로 分離된 初版을 統合調整하여 單一版으로 만든 점과, 둘째는 緡字에 대해서는 New International Dictionary를 基礎로 했다는 점과, 專門用語는 美國式과 英國式을 混合使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代案의 規則이나 任意의 追加事項을 두어 圖書館의 實情이나 目錄作成者에 의해서 便宜에 따라 使用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넷째는 形式(style)에 관한 問題를 다루지 않고 시카고大學校 出版部의 “a manual of style”에 따르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第1部에 있어서 諸章內의 規則番號가 助記性을 갖도록 하여 記憶에 容易하도록 한 점과 記述의 水準을 段階別로 나누어 圖書館의 規模나 實情에 맞는 段階를 擇하여 記述하도록 한 점 등도 特異한 점이며, 規則의 文形이 大부분 命令文體로 된 것 또한 特殊한 것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強力한 施行을 意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초기의 審議過程에서 JSCAACR의 改訂版을 위한 規則은 確信의 規則이고 命令의 規則이어야 하며, 그 規則은 可能한限 狹窪의 用語의 사용을 禁

64) ibid. p.197.

65) Weintraub, D. Kathryn, AACR 2 : A Review Article, Library Quarterly, Vol. 49, No.4, p.435.

하여야 한다고 決定⁶⁶⁾한데서 結果된 것으로 보인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單行本의 書誌記述形式에 대한 規則은 記述部의 13個章 가운데 第2章에 規定되어 있는 바 記述部는 本來(初版의 경우) 第2部에 該當하였으나 이 規則에서는 第1部로 再編成되었다. 이것은 現行의 目錄記錄이 항상 著作의 記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反映한 것이며, 實際의 으로 볼 때 아마도 각 著作의 平凡한 標目에 대해서 規定하는 것 보다는 共有目錄(shared cataloging)에 有效한 著作의 記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反映한 것으로 考慮된다.⁶⁷⁾

이 規則 중 가장 현저하게 改訂된 第1部는 ISBD(G)에 철저하게 基礎하여 序論 이외에 13個의 章으로 區分하였으며, 그들은 각각 記述資料의 形態에 따라서 分離하였다. 第1章은 分析(Analysis)이라 領하고, 著作의 內容을 記述하기 위한 약간의 代案的인 方法을 提示하고 있는 第13章과 더불어, 一般的인 記述規則으로서 實際의 으로 모든 資料에 關係된 規則이며, 第2章부터 12章까지는 特殊資料形態, 예를 들면 單行本, 映畫, 마이크로필름, 碳書 등에 關한 記述規則이다. 이러한 組織의 結果로 第2章부터 12章까지의 規則은 反復의이며 때로는 規則 自體가 第1章에 대한 參照形態에 지나지 않는 條項도 있다. 그러므로 使用者들은 第1章과 其他 章들 사이를 언제나 앞뒤로 參照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단일 出版物이 非圖書資料로 된 連續刊行物일 경우—즉 예를 들어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形態로 된 連續刊行物일 경우—使用者는 連續刊行物에 대한 規則인 12章과 더불어 마이크로 품에 대한 規則을 綜合해서 사용해야 하는 동시에 모든 資料에 대한 共通規則인 第11章과 13章도 結合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記述의 組織은前述한 바와 같이 ISBD(G)의 形式에 따라 全體記述事項을 다음의 8개 事項으로 區分하였다.

1. 書名著者表示事項
2. 版次事項
3. 資料(또는 出版物의 形態) 特定細部事項
4. 出版·配布事項
5. 形態的 記述事項
6. 시리즈事項
7. 註記事項
8. 標準圖書番號(ISBN) 및 購買可否事項

이에 대해서 前版의 그것과 比較해 볼 때 “資料特定細部事項과 出版·配布事項 중의 配布事項, 形態的 記述事項, 標準圖書番號 및 購買可否事項” 등이 새로운 事項이라고 볼 수 있으나 資料特定細部事項은 이 規則에서도 跟踪바와 같이 實際는 第3章의 地圖資料와 12

章의 連續刊行物의 記述에만 該當하는 것이고, 配布事項은 出版事項의 範圍를 擴大한 것이며, 形態記述事項은 종전의 對照事項을 用語를 改定하고 ‘著作의 範圍’(extent of item)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설상의 追加事項은 國際標準圖書番號 및 購買可否事項 뿐이다. 이는 圖書의 國際的 流通目的의 一環으로 圖書에 國際標準圖書番號(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記入하는 데에서 起因된 것이며, 購買可否에 關한 記述 역시 國內外 利用者에게 보다 實體적인 情報를 提供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6) Kelm, Carol 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econd Edition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2, No.1, Winter 1978. p.27.

